

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제 호

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 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안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등으로 용도변경된 공장용 토지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불균일과세) ① 불균일과세 대상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등으로 용도변경된 지역에서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일 이전에 공장을 취득(공장신축용토지 및 건축중인 공장을 취득하여 준공한 것을 포함한다) 하여, 이 조례 시행일 현재까지 가동하거나 일시 휴업중인 공장의 부속토지로 한다. 다만, 지적고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장용 부속토지는 제외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 규정에 의거 산출한 세액이 세율 1000분의 6으로 산출한 세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을 경감한다.

제 3 조(면제신청)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균일과세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4 조(규칙)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1 (시행일) :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 (적용시한) :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